2023년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 과업지시서

동국대학교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국대학교를 이하 "갑", 용역수급계약자를 이하 "을"이라 하며 아래의 과업지시서 내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계약기간 : 2023. 08. 21 ~ 2024. 08. 20(1년)
- 2. 파견인원 : 총 1명(2023. 08. 08. 기준)
 - * 파견인원의 증감 시 용역비는 그에 맞추어 조정한다.
- 3. 기본급(수당포함) : 월2,400,000원 (세전)
- 4. 근무시간 : [월-금] 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 / 1일 8시간 주 5일 근무)
 - ※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며, 본교 상황(방학기간 등)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- 5. 근무자 채용조건 및 인력관리
 - 가. "갑"이 근무가 불성실한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"을"은 즉시 이를 교체토록 하며, 최상의 인력 수급을 위하여 "을"은 "갑"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나. 용역원의 부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배상책임은 "을"에 귀속된다.
 - 다. 근무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, 신원, 안전관리, 근무수칙유지, 노동법 준수 등 근무자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"을"에 귀속된다.
 - 라. 근무자 입사 시 근무시간 및 휴가 등 복무 관련한 사항은 "을"측에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다.
 - 마. 업체는 년 4회 이상의 각종 법정교육(양성평등교육 등) 및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바. 신규입사자의 인수인계 기간은 총 2일로 한다.

6. 후생복지

- 가. 최저임금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파견직에 대해서는 선발 시 별도로 정한다.
- 나.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.
- 다.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반드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.
- 7. 경고 및 해약
 - 가. "을"은 시방내역을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, 구두 경고 및 서면경고를 할 수 있음
 - 나. 서면경고가 3번 이상일 경우 "갑"은 파견용역 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음
- 8. 퇴직금, 복리후생비 등은 발생 시 청구하며, 기 지급받은 금액 또는 이전 업체로부터 인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한다.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.

